



大韓帝國 前後期의 獸醫發達史

이 시 영 | 경마평론가

緒論

대한제국 전후기라고 하면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부터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시기와 대한제국의 반포등 정치적으로 격동의 소용돌이와 그 이후 통감부(統監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를 거치면서 식민지시대로 접어드는 시기 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되는데 수의에서도 일본은 그들이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로부터 받아드린 것을 다시 한국에 접목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는 정부조직상 과거 병조(兵曹)의 사복시(司僕寺)에서 관장하던 말 위주 수의정책이 이원화하게 된다. 하나는 병조를 이어받은 군부(軍部)와 또 다른 하나는 병조의 일부와 과거 호조(戶曹)등의 일부로서 다시 창설된 농상공부(農商工部)이다. 한편 조선조 초기부터 수의와 말을 다루었던 사복사는 태복사(太僕司)라는 이름으로 궁내부에 속하면서 왕실의 말과 마차만 관장하게 되었다.

군부에서는 군무국(軍務局)에 마정과(馬政課)를

두어서 수의와 제철공(蹄鐵工;장제사)의 정책과 군대에서 필요한 마필 생산정책을 다루었으며 농상공부에는 농무국(農務局)의 농사과(農事課)에서 일반가축과 군대용 말이 아닌 일반 승용마에 관한 수의와 제철공에 관한 정책을 다루었다. 이 시기가 갑오경장 다음해인 1895년 조선조 개국 504년의 일이다. 이후 1910년 까지 약 15년간에 걸쳐 자구수정등 수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크게 변화된 것은 없었으며, 1909년 7월 30일에 군부의 해체와 함께 무관학교도 해체되면서 군대의 사관은 일본에 의뢰키로 하였다. 그러므로 군부에서의 수의정책이나 교육은 일본의 뜻으로 돌렸기에 군대내에서는 각 부대에 수의라는 직명이 배치되긴 하였지만 수의정책이나 수의교육을 다루는 기관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농상공부는 그대로 조선총독부에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의관계 교육기관도 양분되게 되었다. 개국 504년 5월 16일에 훈련대사관양성소(訓練隊士官養成所) 관제라는 것이 반포되고 이는 후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라는 명칭으로 개정된다. 여기서는 군대의 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기에 말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말은 전차이기에 군대에서는 병기로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다. 그러므로 군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말을 다룰 줄 알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 육군무관학교에서는 마학(馬學)이라는 학문을 강의하게 된다. 또한 군부에서는 장차 육군수의학교(陸軍獸醫學校)를 세울 것을 계획하여 마정과의 업무에 육군수의학교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기도 하였다.

한편 농상공부에서는 부설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또는 농림학교를 설립하는데 초기에는 농업과 임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 1909년에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농업 임업 수의의 속성과를 두도록 하고 그해 수의속성(獸醫速成科)과 첫 입학생을 모집하기에 이른다. 이는 아마 이해에 군부를 해체하고 또한 육군무관학교를 폐지함으로 군대에 필요한 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수의속성과 학생 모집 이후에는 수의 속성과나 수의분과 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군부(軍部)에서의 수의(獸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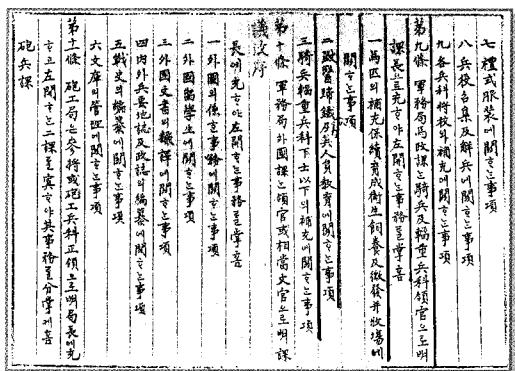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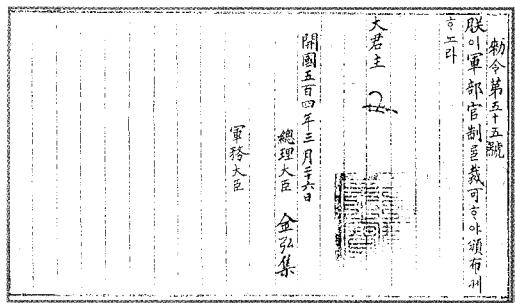
갑오경장 이후 개화의 물결을 타고 신식 관제가 탄생된다. 그리고 과거 조선조 초기의 경국 대전에서 정했던 마의(馬醫)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각 군대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수의라는 관제가 등장한다. 모두가 일본식 용어로 시작된다. 또한 자료는 거의가 일본의 것이다. 1895년 칙령 제 55호로서 군부관제가 제정된다.

여기에는 군무국에 마정과를 두어서 군대에서의 수의정책과 수의사 양성 및 제철공의 양성 등을 맡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수의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895년 칙령 제 55호 군부관제(軍部官制)

군부관제는 농상공부관제보다 하루 늦은 3월 26일에 반포된다.

1895년 칙령 제55호 반포문서 (대군주 밑의 싸인은 고종 황제의 것)와 군부관제 제 9호



농상공부 관제에서의 수의의 위치와 군부관제의 수의의 위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당시 농상공부관제에서는 국별로 업무를 분장하였으나 군부관제에서는 과별로 업무를 명시한 것이 다르다. 농상공부에서는 농상공부분과 규정에서 농사과를 두어서 수의 업무를 다루도록 했지만

수의역사특별위원회

군부관제에서는 관제 규정 자체에서 마정과라는 것을 두고 수의관련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서 군부관제에서는 수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는 軍務局 砲工局 經理局 軍法局 醫務局의 6개국을 두었는데 마정과 수의는 군무국에서 관할하였다.

다음의 규정에서 제철공이라는 것은 오늘날 장제사(裝蹄士)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 말의 발굽을 깎아 주고 편자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편자는 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철공(蹄鐵工)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 같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第七條 軍務局은 協辦으로서 局長에 充 하고 左開하는 三課를 實야 其 事務를 分掌케함
軍事課 馬政課 外國課

第九條 軍務局 馬政課 는 騎兵 及 輜重兵科 領官 으로서 課長으로 充 해야 左開하는 事務를 掌함
一 馬匹의 補充 保續 育成 衛生 飼養 及 徵發
并 牧場에 關하는 事項

二 獸醫 蹄鐵工 及 其 人員 教育에 關하는 事項
三 騎兵 輜重兵科 下士以下의 補充에 關하는 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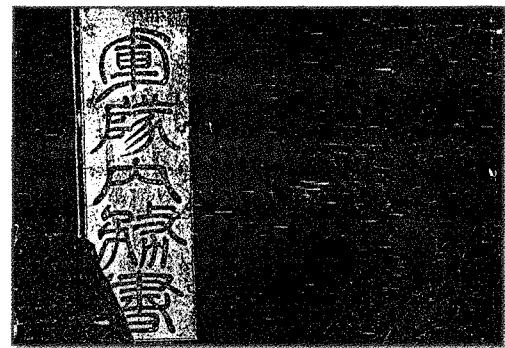
1900년(광무4년) 9월 17일 군부관제 개정

군부관제를 개정하는데 종전의 것에 비하면 크게 규모가 축소되는 감이 있다. 개정된 군부관제에는 포공국(砲工局; 砲兵課 工兵課)과 경리국 2개국을 두었으며, 경리국에는 1과와 2과를 두는데 2과의 업무중 1. 복구양말(服具糧秣)급 마필에 계하는 급여규정에 관하는 사항”만 있을 뿐 마필이나 수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마 마정과를 없애는 대신 말이나 수의에

관해서는 기병대나 치중병대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군부에서는 오직 포병과 경리만을 위한 업무를 담당시켰다. 이는 포병대와 치중병대 설치 관련 규정에서 수의나 제철공이 아주 축소된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1900(광무4년)에 반포된 군대내무서의 표지와 제7장 연대본부정칙의 제9조에서 수의의 임무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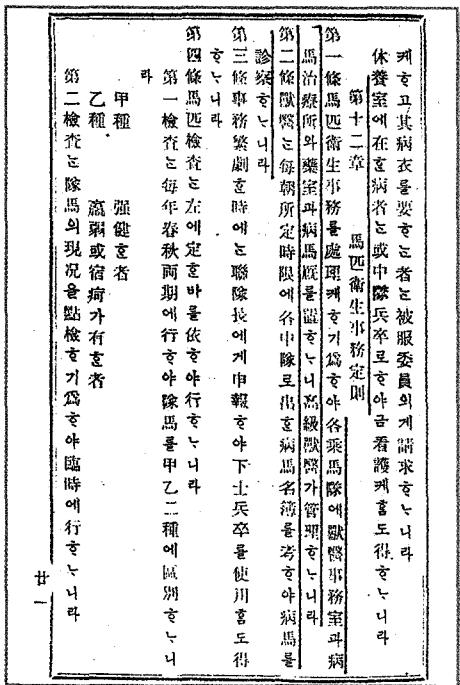
| | | | | |
|---|---|---|---|------------|
| 第九條 一等獸醫補는 踏鐵隊長의 계直隸 亞馬匹의衛生及 踏鐵事務를 理하고 二二等獸醫補는 踏鐵工長을 指揮해야 其職務에 服行케함니라 | 第十條 火工正校는 專혀 弹藥의 配與及 保全書를 任하고 工場을 管理해야 工長及工下長의 계職務를 分課하고 工長及工下長은 火工正校의 指揮 를 受해야 各其 分擔호 工業을 監視하며 工卒의 계職務를 分課하고 且自 己도 工業에 從事하니 但 騎兵隊의 工長及工下長은 兵器 委員의 指揮 를 受하나니라 | 第十一條 繩工長及同下長은 踏鐵工長及同下長은 踏鐵工長及同下長은 踏鐵 工卒을 指揮하고 工業을 監視하며 各工의 계職務를 分課하고 且自 己도 工業에 從事하나니 若 中隊의 繩工及 踏鐵工으로 해야 各工을 助 役케하는 時는 指揮監視하여 可하나니라 | 第十二條 踏鐵工長과 同下長은 踏鐵工長의 指揮를 受해야 裝蹄 刷毛等과 踏鐵 工卒에 關한 一切事項을 擔任하나니라 | 第八章 大隊本部定則 |
|---|---|---|---|------------|

大韓帝國 前後期의 獸醫發達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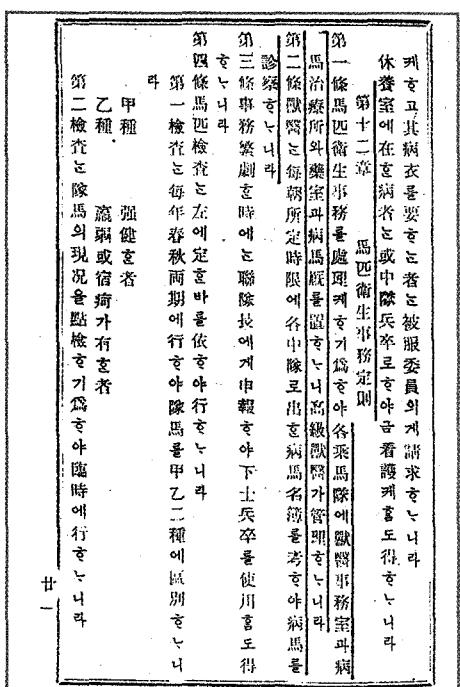
1900(광무4년)에 반포된 군대내무서의 표지와 제7장

연대본부정칙의 제9조에서 수의의 임무를 정하였다

대한수의



廿一



廿一

이때 군부관제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1895년도의 군부관제와 비슷하면서도 대폭적으로 기구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수의의 교육과 수의학교라는 명칭까지 등장한다.

제8조에는 軍部에는 軍務局, 經理局, 醫務局, 軍法局, 海防局을 두고 제9조에서는 軍務局에는 軍事課와 步兵課 騎兵課 砲兵課 工兵課를 둔다고 하였으며 제14조와 15조에서 기병과의 구체적인 업무가 명시되고 있다.

第十四條 軍務局 騎兵課長은 騎兵科 副領으로 补하고 課員二人은 騎兵科 參領 正副尉 及 輜重兵科 參領 正副尉와 陸軍 獸醫로 补함이라

第十五條 騎兵課에는 左의 事務를 掌함이라

一. 馬匹의 供給 牧養 衛生 育成 徵發 及 牧場
에 關한 事項

二. 獸醫의 材料 及 蹄鐵에 關한 事項

三. 獸醫部의 教育 及 人員의 補充과 軍籍과 各
兵科 蹄鐵工長 以下 補充에 關한 事項

四. 獸醫學校 及 軍馬補充과 軍馬 衛生會議에
關한 事項.

五. 騎兵 輜重兵 下士 以下 補充에 關한 事項

六. 其他 騎兵 輜重兵 及 獸醫에 關한 事項

이 규정에 의하면 수의는 기병과장 이외 2명의 직원중 한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병과에서는 주로 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는 앞으로 육군수의학교를 세울 것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4항에 수의학교를 관리하는 것도 기병과장의 소관으로 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치중병과(輜重兵科)는

수의역사특별위원회

말이 끄는 수송부대를 말한다.

1908년(융희원년) 칙령 제14호 군부관제 개정

융희 원년에 들어서 군부관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게된다. 이해 8월 26일에 종전의 군부관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군부관제를 반포하였다.

여기에서 의하면 군부에는 軍務局과 經理局 2국을 두며 군무국에는 人事恩賞課 教育課 兵器課 馬政課 衛生課 軍法課의 6개과를 두었는데 이중 마정과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의 2개조이다. 이때는 이미 대한제국의 멸망을 눈앞에 둔 시점이며 또한 모든 정책결정은 통감부에서 하였기에 과거 군부관제에서 있던 수의정책은 모두가 삭제되었다. 마정과에서는 단지 군마의 보충과 조교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었다.

第十七條 馬政課長은 騎兵課 領官으로 此에 補하고 課員一人을 實(치) 허되 正尉로 此에 補함

第十八條 馬政課는 左의 事務를 掌함

一 軍馬의 改良 衛生 補充에 關한 事項

二 軍馬의 支給 交換 及 調敎에 關한 事項

1909년(융희3년) 7월 30일 칙령68호 군부해체

일본의 야망으로 이 땅을 지켜야 할 군부가 해체된다. 그 대신 궁중에 친위부(親衛府)를 설치하여 황실경호에만 담당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장교들은 일본군에 편입된다는 것이다. 군부가 해체되면서 육군무관학교도 9월 15일로서 폐지하게되었으며 이미 이 이전에 군부관제가 축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사관양성과 함께 무관학교에서의 수의교육은 무관학교의 폐지로서 사실상 종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군대의 조직상에는 군대조직에서 수의사를

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군대 내무서이다. 이때는 수의와 관련되는 부대가 창설되면 수의라는 직종이 명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기병대를 비롯하여 심지어 포병대에서 까지 수의라는 직종이 있었다. 그러나 수의사의 정확한 직무에 대해서는 각 군대별로 적시된 것이 없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의는 어떻게 확보했을까. 1909년에 무관학교도 문을 닫았으며 1908년의 농림학교의 수의속성과도 한해만 모집하고 중단하고 말았다. 이의 해답은 군대 내무서(軍隊內務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수의의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군대조직에서의 수의

대한제국의 군대내무서는 1900년(광무4년) 6월 19일에 원수부 군무국(軍務局) 총장(總長) 육군부장(陸軍副將) 이종건(李鍾健)이 제정하여 고종황제에게 바친 것이며 이를 7월 17일에 인쇄 반포한 것이다. 비록 일본의 군대내무서를 벤치한 것에 불과하지만 군대에서의 각 직종에 대해서 명시한 우리 나라 최초의 군대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수의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군대에서는 수의는 일단 연대단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장 연대본부정칙(聯隊本部定則) 제8조에는 군의(軍醫)에 관한 사항이, 제9조에는 수의(獸醫)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군대내무서(軍隊內務書)와 수의

第九條 一等獸醫補는 聯隊長으계 直隸 허야 馬匹의 衛生 及 蹄鐵事務를 統理 허고 二三等獸

醫補는 蹄鐵工長을 指揮 향아 其 職務에 服行케
하느니라

또한 제12장에 馬匹衛生定則이라는 章을 두어서
수의사가 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다.

第一條 馬匹衛生事務를 處理케 향기 爲 향아 各
乘馬隊에 獸醫事務室과 病馬治療所와 藥室과
病馬廄를 實하느니 高級獸醫가 管理하느니라

第二條 獸醫는 每朝 所定時間에 各中隊로 出호
病馬名簿를 考하야 病馬를 診察하느니라

第三條 事務繁劇한 時에는 聯隊長에게 申報
향아 下士兵卒를 使用함도 得하느니라

第四條 馬匹檢查는 左에 定호바를 依하야 行
니라

第一檢查는 每年春秋兩期에 行하야 隊馬를
甲乙二種에 區別하느니라

甲種 強健한者

乙種 瘦(리)弱 或 宿疴(숙아;지병)가 有한자

第二檢查는 隊馬의 現況을 點檢 향기 爲 향아
臨時에 行하느니라

第三檢查는 新馬入營할 時에 檢疫함目的으
로써 行하느니라

第五條 獸醫事務室에는 左開帳簿를 實하느
니라

一 日記

二 診察簿

三 命令錄

四 受病原因書

五 去勢術施行 及 成績簿

六 藥物出納簿

七 隊馬衛生誌

八 診察所用書

九 請求書 及 送達書

第六條 藥物은 毒藥과 劇藥 及 常用藥의 三種
에 分하야 劇藥과 毒藥의 貯置 하는 方法은 前章

第七條 中 揭호바에 準하느니라

第七條 骨折과 狂犬病 及 其他 疾病에 罷한 馬
匹中에 難治에 至한者는 賣却하야도 無妨하느
니라

제25장에는 馬廄定則이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
에는 馬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
하고 있다.

第一條 聯(大)隊馬는 各 中隊에 區分하고 中隊
週番이 管理하느니 此廄에 當番卒 若干을 향아
諸般事役에 服케 하느니라

第二條 交代定時에 當하는 上番 當番卒은
週番 上等兵이 引率 향고 廐에 至하야 上等兵
目前에서 交代케 하느니 此時 下番 當番卒은 廐
內 規則을 申述하고 諸器具을 傳受하느니라

第三條 廐內에 火를 持來 흡과 吸煙 흡을 禁하느
니라

第四條 水桶에 水를 吸入 흡은 夏節에는 飲水
前 三十分이요 冬節에는十分前이니 特別히 水
桶의 淨否를 注意 흡이 可하느니라

第五條 廐內에는 恒常 空氣를 流通케하고 又 馬
匹이 廐外에 在한시는 반드시 廐舍에 窓을 開 향
고 牆板을 乾燥케 흡이 可하느니라

第六條 鞍 及 毛 褥는 廐中 鞍掛所(안과소)에
置하고 頭絡과 副頭絡과 繫繩과 掃刷囊 及 小
勒은 其傍釘에 掛하느니라

第七條 馬匹의 掃刷는 朝夕으로 行하느니 但
日曜日 及 其他 休暇日에는 夕 掃刷는 或行치
아니하야도 無妨하느니라

수의역사특별위원회

第八條 各馬房에는 馬의 名稱 及 記號等를 記
호 馬名牌을 掛へ고 病馬에는 病馬牌을 掛へ
니라

이는 지금부터 100년전 군대에서의 말 담당 수의사의 역할과 마구간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명시한 기록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 이의 원본은 위에서 설명 한대로 일본 육군성에서 발간한 군대내무서이다 즉 일본의 군대내무서(1894년 陸達 제80호 軍隊內務書 第二版 別冊의 通被定)와 우리의 것이 내용이 꼭 같기 때문에 이를 번역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일본판의 군대내무서는 1894년陸軍大臣 大山巖의 명의로 발간된 것인데 제2판이다.

우리군대내무서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군대내무서와 구의에 관한 규정

이 책은 1894년에 발간된 것이다.



| | |
|-------------------------------------|---|
| ルヲ以テ任トス | 第八條 二等軍醫正 在野戰砲兵聯隊ニハ 聯隊長ニ直隸シ 聯隊ニ 關スル衛生ノ事ヲ統理シ 一等軍醫在テハ二等軍醫ニ以下ヲ指 揮監督シ且聯隊中一大隊ノ衛生事務ヲ兼掌メ |
| 第十條 二(三)等軍醫ハ聯隊長ニ直隸シ 一等軍醫ノ職務ヲ 補佐ス | 第九條 一等軍醫ハ聯隊長ニ直隸シ 聯隊ニ關スル衛生ノ 事ヲ掌理シ 二(三)等軍醫以下ヲ指揮シ 其職務ニ履行セシム |
| 第十條 二(三)等軍醫ハ聯隊長ニ直隸シ 一等軍醫ノ職務ヲ 補佐ス | 第十條 二(三)等軍醫ハ聯隊長ニ直隸シ 一等軍醫ノ職務ヲ 履行セシム |
| ノ事ヲ統理シ 二(三)等軍醫及聯隊工長ヲ指揮シ 其職務ニ 補佐ス | 第十一條 一等軍醫ハ聯隊長ニ直隸シ 一等軍醫ノ職務ヲ 履行セシム |
| 履行セシム | 第十一條 一等軍醫ハ聯隊長ニ直隸シ 一等軍醫ノ職務ヲ 履行セシム |

그 이전에 이미 제1판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본 육군은 이를 1908년에 개정해서 보다 보완되고 더욱 상세히 기록한 것이 육군대신 寺內正毅(후에 조선총독)에 의해서 발간된다. 아마 이것이 일본 식민지 시절 한국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수의사의 기본임무였을 것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군대에 필요한 수의사는 각 군의 고급 수의사가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한국에 필요한 수의사의 양성은 군대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본의 군대내무서와 수의

1908년에 개정된 일본판 군대내무서의 제7장 연대본부 제관의 직무 중 제11조에 수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1조 獸醫는 말의 衛生事務에 從事하며 裝蹄 刷毛의 業務, 見習獸醫官 獸醫生 及 蹄鐵工長以下の 教育을 擔當하며 恒常 高級獸醫는 次級 獸醫以下の 業務를 監督한다. 但 重砲兵聯隊의 高級獸醫는 聯隊長의 命을 받아 聯隊本部에 있어서의 말의 衛生事務를 兼任하고 次級獸醫는 高級獸醫의 명을 받아 事務를 分掌한다.

蹄鐵工長은 獸醫의 命을 받아 工業을 監督하고 作業品及 諸 物品을 監守하며 工卒의 教育을 補助하며 工場의 取締에 임하여 스스로 工業에 從事하여 治療調劑를 補助하고 病馬의 看護를 擔當하여 裝蹄 刷毛 其他 말의 衛生에 關한 細部的인 일을 擔當한다.

또한 제24장에는 馬의 衛生項目이 따로 설치되어 獸醫에 관한 具體的인 業務가 明示되었다.
 第一 獸醫事務室은 病馬의 診斷 治療 말의 檢查 裝蹄 刷毛 見習獸醫官 獸醫生 蹄鐵工長 蹄鐵工의 教育 其他 말의 衛生에 關한 一切의 事務에 從事하는 곳으로서 高級獸醫가 管理한다.
 第二 獸醫는 各 中隊에 있어서의 말의 위생 장제 척모에 注意하고 때로는 馬房을 巡視하여 馬糧納品時 그 검사에 입회하고 練習出場時 말의 狀態를 觀察하여 病馬廄 隔離廄 蹄鐵工場에 있어서의 諸 規定의 修行이 확실한가 또는 그 관리에 속한 건물 비품 기계 기구의 청결 보존의 책임을 진다.

第三 수의는 각 중대의 진단순서가 정해진 연대 대대본부의 馬房過番上等兵이 引率한 병마를 진단 치료한다. 獸醫退營後 不時에 急病馬가 발생하였을 때는 营內 居住 蹄鐵工長 또는

蹄鐵工卒은 수의가 도착할 때까지 救急處置를 하여야 한다.

第四 수의는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병마를 就業 시킬 것인가 休業시킬 것인가 病馬廄에 넣을 것인가의 3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第五 수의는 진단 후 인솔자에게 병명 진단구분 轉歸 勞動의 程度 및 飼養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고 病馬名簿에 記錄하여야 한다.

第六 調劑는 藥室에서 수의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 단 劇 毒藥과 같은 것은 제철공장이 조제하고자 할 때 別途로 保管된 藥室에서 수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의가 退勤後는 週番大尉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七 수의는 그 部隊內에 있어서의 屠獸 屠肉의 檢查를 행한다.

第八 수의는 新馬 入隊 傳染病流行 기타 위생상 필요한 때는 연대장의 명을 받아 말의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第九 病馬廄 또는 隔離廄에 있는 병마는 수의가 그 치료를 담당하고 제철공장 또는 제철공졸이 그 간호를 담당한다. 단 공졸이 부족시는 兵卒을 사용해도 된다. 전항 공졸 또는 병졸의 인원은 말의 수자에 따라서 수의가 정해서 病馬所屬의 중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第十 수의는 제철공장, 중대장은 제철공졸로 하여금 말의 手掌時에 말의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護蹄에 주의하여 釘綰等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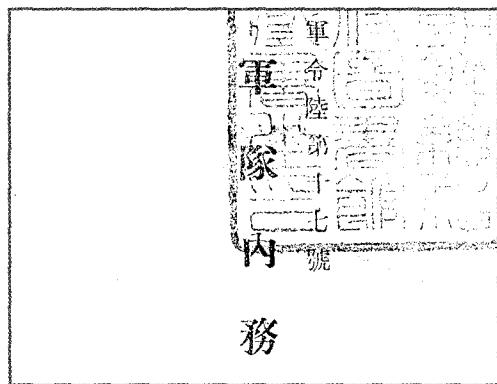
第十一 수의의 소속된 부대에 있어서의 병마의 진단 치료 척모 거세 또는 장제를 요할 때는

수의역사특별위원회

獸醫附屬의 最寄部隊에 依賴하던가 地方獸醫蹄鐵工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十二 傳染病의 예방에 관한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거나 그 처치를 하여야 한다.

1908년에 개정된 일본의 군대내무서



| 第十一 獸醫ハ馬ノ衛生事務ニ服シ | 看護長ハ軍醫ノ命ヲ承ケ患者ノ看護ヲ擔任シ普療調劑 |
|----------------------------------|--------------------------|
| 習獸醫官獸醫生及蹄鐵工長以下ノ衛生事務ニ服シ裝蹄剔 | ヲ補助シ上等看護卒ノ勤務ヲ監視シ及衛生ニ關スル細 |
| 級獸醫ハ聯隊長ノ命ヲ承ケ聯隊本部ニ於ケル馬ノ衛生事務ニ服シ裝蹄剔 | 看護長ハ軍醫ノ命ヲ承ケ患者ノ看護ヲ擔任シ普療調劑 |
| 次級獸醫ハ高級獸醫ノ命ヲ承ケ工業ヲ監督シ作業品及諸物 | ヲ補助シ上等看護卒ノ勤務ヲ監視シ及衛生ニ關スル細 |
| 蹄鐵工長ハ獸醫ノ命ヲ承ケ工業ヲ監督シ作業品及諸物 | ヲ補助シ上等看護卒ノ勤務ヲ監視シ及衛生ニ關スル細 |
| 品ヲ監守シ工率ノ教育ヲ補助シ工場ノ取締ニ任シ且自 | 看護長ハ軍醫ノ命ヲ承ケ患者ノ看護ヲ擔任シ普療調劑 |
| ラ工業ニ從事シ治療調劑ヲ補助シ病馬ノ看護ヲ擔任シ | ヲ補助シ上等看護卒ノ勤務ヲ監視シ及衛生ニ關スル細 |

第十三 軍馬는 活動兵器이므로 强健히 保育하여 傷瘡나 疾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下士以下들이 말의 위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 경우 소속된 각 증대의 장교들이 입회할 수 있다.

第十四 말의 위생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총 12가지의 사양관리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제25장에는 廐(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양관리를 위한 규정으로 총 16개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내용은 생략한다.

군대에서 사용한 수의서적들

군대내무서의 수의 항목은 약 100년 전에 군대에서의 수의에 관한 일종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또한 수의도 고급수의가 양성하도록 하였기에 필요한 교재가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용된 수의서적은 당연히 말과 관련되는 교재일 것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발간한 마학교정(馬學教程)이 육군무관학교에서 마학교재로 사용되었듯이 군대에서의 수의 양성교재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마학교정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3권이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08년 12월에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편찬한 것이다. 두 번째의 것이 1940년 일본육군예과사관학교(陸軍豫科士官學校)장이 발행한 것인데 전의 것에 비해서 보다 더 내용이 충실하고 말 이외 군용동물로서 군견(軍犬)과 군용구(軍用鳩;비둘기) 그리고 러(驢;당나귀),

나(馬; 노새) 소와 수우(牛 및 水牛) 그리고 기타의 동물로서 낙타(駱駝)와 훈록(訓鹿; 사슴)이 실려 있다. 아마 이러한 교재로서 군대에서 필요한 수의 기술 혹은 제철공을 양성했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의 와중에 그들은 세 번째 개정판을 낸다. 1940년 4월에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장 명의로 발간하는데 마학편은 거의가 전의 것을 그대로 본받았지만 군용동물로서 군견 군용구와 려 및 나에 있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었으며, 소와 수우에서는 종전의 것과 비슷하나 낙타는 별도로 장을 만들었으며 훈록은 불과 두줄로서 하나의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부록으로 각종 그림이나 도표는 전의 것보다 더 상세하다. 이는 전쟁을 앞둔 일본정부로서는 말이 최대의 무기인고 이를 자세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불과 4개월만에 다시 개정했을 것이다.

그 외 마학(馬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 중앙도서관에 몇 개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1914년에 발간된 마학이라는 책이 있다. 이는 독일의 K. Imai 교수가 쓴 Hipology라는 책을 今井吉平 수의학박사가 번역한 것인데 책은 이교수의 사후에 발간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 육군성(陸軍省)에서 발간한 마학휘편(馬學彙編)이라는 책이다. 총 9권으로 구성된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언제 발간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책은 순수한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나 전형적인 한어체(漢語體)가 아니고 일본식 한어체이다. 즉 어순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어순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본에서 발간된 것인데 발간은 군학편집국(軍學編輯局)간으로 되어 있고 육해군대원수 감정(陸海軍大元帥鑑定)이라고 되어 있다. 부표 도표의 일부에 인용된 통계자료가 1913년의 것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서 1914년도에 발행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도 하다.

이상 소개한 수의서적들은 이른바 동양수의학에서 근대수의학 즉 서양수의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수의서적이라 할 수 있다. 마학교정 이외 모든 수의서적들은 당연히 일본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군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조선조 초기의 수의서적들이 국방을 위해서 편찬된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 수의학도 바로 국방용으로 편찬된 것이다.

일본도 동양수의학에서 서양수의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사학으로 발전되었다. 수의학 자체를 군학편집국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수의학서적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이 땅에 들어 오게되었으며 군사제도에도 일본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군제학교정(軍制學教程)을 우리 말로 번역하여 육군무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였는가 하면 일본육군사관학교에서 발간한 전술학교정(戰術學教程) 등 많은 군사학이 무관학교 생도들에게 가르쳐졌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구한국시대의 모든 수의학의 제도는 일본의 그것을 본받을 수밖에 없었다.

구한국시대에 가장 오래된 수의정책과 관련되는 것이 군제학교정이다. 이는 1888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발간된 책인데 언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책이 육군

수의역사특별위원회

무관학교의 교재였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아마 1895년 이후 1900년 이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책이 아마 공식적으로 수의(獸醫)라는 용어를 사용한 구한국최초의 서적일 것이다. 이 책은 실제로 우리의 군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마학교정과 마학 그리고 마학휘편 수의학사제요 등 당시의 수의관련서적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육군무관학교와 수의교육

갑오경장이후 국가의 모든 행정기구가 서구화 현대화되는 가운데 군대에서도 사관생도의 양성을 필요로 느꼈기에 1895년에 이를 위해 서 훈련대사관양성소(訓練隊士官養成所) 관제가 반포된다. 바로 육군무관학교의 전신이다. 칙령 제 91호로서 5월 16일에 반포한 내용은 훈련대가 필요로 하는 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곳으로서 수학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생도를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다음 해는 무관학교라는 관제로 개정한다.

무관학교의 주요내용은 무관출신지원자를 선발하여 학도를 충원하며 초급무관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한다라고 했으며 직원은 교장(군사과장 겸직), 부관1인 의관 1인, 교두 1인, 조교 8인, 번역관 2인, 주사 2인 전어생 약간 명을 둔다고 했다. 이중 제9조 조교는 교관의 명을 받아 교육과목의 일부를 분담하고 전속 조교는 武器 馬廄 구급기타 교육재료의 보관을 담당하고 교내 관사에 거주하여 학도를 감시

하는 책임을 항상 가지고 있다. 또한 수업 연한은 군부대신이 따로 정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무관학교에서는 훈련용 말이 있었으며 이는 조교가 책임지고 관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관학교관제 칙령이 반포된 1월 15일 관보에는 군부광고제2호 무관학교 학도모집령이 나와 있다. 자격은 인민 중 20-30세까지이며 체격은 5척 이상으로 체질 강건한 자, 시험과목은 한문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자, 수업 연한은 1년이며 학자금과 식료를 지급하며 자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후 무관학교 관제는 정원이나 학도의 지원 자격 선발기준 등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정식으로 수의가 직원으로 등장하는 것은 1904년(광무8년) 9월 24일 관제 개정 때이다. 그러나 이미 육군무관학교교칙에는 마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되었으며 그 교과서는 마학 교정으로 되어 있었다.

무관학교는 당시 대한제국시대에 필요한 무관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1909년 군부관제를 폐지하면서 무관학교 관제도 함께 폐지된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대한제국 사관생도에게 가르쳤던 마학이나 군제학교정 전술학교정 등과 같은 과목도 자취가 없어지고 말았으며 일본의 군대내무서에 의해서 일본군에서 군대에 필요한 수의를 양성하게 된다.

1895년(開國 504년) 5월 16일 勅令 제91호

訓練隊 士官養成所 官制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士官養成所는 訓練隊의

用 士官을 必要한 教育하기를 主旨로 修學期間은 三個月로 本所 卒業한 者는 參尉로 任官함.”

1896년(建陽元年) 1월 11일 勅令 제2호 武官學校官制改正件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武官學校는 武官出身志願者를 選拔하여 學徒를 充하여 初級武官必要되는 教育을 修함. 職員은 軍事課長이 兼하며 그 외 副官 1인, 醫官 1인, 教頭 1인, 助教 8인, 翻譯官 2인, 主事 2인 傳語生 若干名으로 두었다. 이중 제9조에는 助教는 教官의 命을 受하야 教育科目의 一部를 分擔하고 專屬助教는 武器 馬廄 救急其他 教育材料의 保管을 擔任하고 校內館舍에 居住하여 學徒를 監視하는 責을 常時擔任함. 修業年限은 軍部大臣이 따로 定한다고 했다.

1898년(光武 2년) 5월 14일 勅令 제4호 武官學校官制改正件

위(1896년 1월 11일)의 勅令을 일부 개정하였다. 또한 지원자격을 武官出身志願者 中에서 推薦으로 選拔하기로 하였으며, 資格은 18세에서 27세까지 身體強壯한 者中 聰明俊秀한 者로 選拔한다고 했다. 또한 中間에 自退하게 되면 推薦人이 每一朔에 罰金10元을 내야한다. 速成科와 卒業科를 두는데 速成科의 修業年限은 軍部大臣이 定하고 卒業과는 5년 이내에 卒業하여야 한다. 職員은 校長에서부터 助教에 이르기까지 총 21인이다.

1898년(光武 2년) 7월 5일 勅令24호 武官學校官制改正件

위 동년 5월 14일자 칙령 11호를 개정하여

“教官 4인을 10인으로 增員하고 教頭는 軍部大臣에게 隸屬하게 하였으며, 校長은 모든 것을 軍部大臣과 相議하도록 했다.”

대한수의사

1898년(光武 2년) 7월 5일 武官學校官制改正件

本 學校에는 校長 以外 軍醫 1인을 포함하여 총 39인을 둔다. 다만 제7조에 군사(軍司)는 校長의 命令을 受하야 校中出納給與와豫算決算과 糧餉經理의 一般事務를 管理하며 校內牧馬事務를 兼掌할事로 되어 軍司가 말을 管理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이나 다음 규정과 그 외 당시 인사 발령 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하면 수의라는 직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군사(軍司)라는 직종에서 군마(軍馬)나 獸醫 蹄鐵工 等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98년(光武 2년) 7월 5일 武官學校官制改正件

定員이 69인으로 늘어났는데 助教들이 30명이 增員되었다. 단 軍馬의 取扱은 從前의 軍司에서부터 餉官으로 移轉되었는데 제8조에 豊관(餉官)은 校長의 命令을 受하야 校中 出納給與와豫算決算과 糧餉經理의 一般事務를 管理하며 校內 牧馬事務를 兼掌할 事로 되어 있다.

1898년(光武 2년) 7월 5일 武官學校官制改正件

제4조 本校의 職員은 如左함이라

| | | |
|----|-----|----------------|
| 校長 | 1인 | 參將或正領 |
| 副官 | 1인 | 正尉 |
| 教官 | 18인 | 副參領 3인 各 兵科正副尉 |
| | 10인 | 外國語學科 5인 秦判任文官 |
| 醫官 | 1인 | 1 2등 軍醫 |
| 獸醫 | 1인 | 1 2등 獸醫 |

수의역사특별위원회

餉官 이외 翻譯官 등 조교까지 총 61명의 직원이 있었다.

第八條 馬術敎官은 學徒의 馬術訓練에 任하고 此校廬 一切事務와 馬匹의 調教를 掌함이라
第十條 醫官은 校內 衛生事務를 掌함이라

第十一條 獸醫는 校內 馬匹衛生 事務를 掌함이라

여기서 수의직종이 생겼는데 이 수의가 학도를 위한 마학 강의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마학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가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임 혹은 그 외 명목으로 교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908년(隆熙 元年) 8월 26일 勅令 제15호 陸軍武官學校官制

육군무관학교는 “陸軍武官生徒에 初級士官이 될 必要한 教育을 行함이라”고 했는데 제4조에서는 本校에 左의 職員을 實寄校長, 幹事, 副官, 敎官, 醫官, 餉官, 獸醫, 翻譯官, 書記郎

第十條 馬術敎官은 生徒의 馬術 及 訓練에 任하고 此 敎具一切事務를 統一히하고 助敎 及 其衛生事務를 掌함

第十一條 醫官은 校內의 衛生事務며 獸醫는 馬匹의 衛生事務를 掌함

육군무관학교 직위표에 의하면 수의는 군의와 함께 參尉의 계급으로 1명과 準士官下士判任文官의 階級으로 1명 계2명이 있었다.

참고로 육군무관학교의 학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과목 | 강의회수 | 백분비 |
|----------------|---------|-----|
| 전술학 | 85회 이상 | 18% |
| 군제학 | 20회 이상 | |
| (단 전술학 강의시 경행) | | |
| 병기학 | 70회 이상 | 17 |
| 축성학 | 50회 이상 | 11 |
| 지형학 | 40회 이상 | 8 |
| 위생학 | 15회 이상 | 3 |
| 마학 | 15회 이상 | 3 |
| 외국어 | 200회 이상 | 42 |

부스틴-에스를 비육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스틴-에스는 산유량 증가 및 성장촉진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육우에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비육우용과 젖소에 사용하는 함량이 틀리므로 그래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비육우 적용함량도 체중 1kg당 0.03~0.06mg 투여시 중체효과 및 사료효율도 개선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현재 저희(LG화학) 바이오텍 연구소에서 제품화하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중입니다.